

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, 적립식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적금의 종류는 자유적립식 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으며, 1세대 1명(1계좌)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.

- ① 기초생활수급자
- ②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인 저소득층

제4조 【가입기간】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~ 3년으로 월단위이다.

제5조 【적립금액】

신규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원단위로 적립이 가능하고 총 저축한도는 900만원이며, 분기당 납입한도는 100만원이다.

제6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에 고시된 신규 가입일 현재 (정기적금의 기간별 기본이율 - 연 0.1%p)로 한다.
- ② 우대이율은 기본이율과 동일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며, 우체국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- ③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, 이는 만기 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.

제7조 【중도해지이율】

중도해지이율은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
제8조 【만기 후 이율】



만기 후 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.

제9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
제10조 【기타】

- ① 이 적금은 일반과세,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.
- ② 이 적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은 불가하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